「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발의일자:** 2026년 10월 6일
2. **발 의 자:** 전희정, 김재우 의원(2인)
3. **찬 성 자:** 김정미, 김종화, 김지식, 김춘남, 김현경, 김효석, 박윤경, 이상호, 이정호, 이정희, 이탕모, 임명섭 의원(12인)
4. **회부일자:** 2026년 10월 7일
5. **상정일자:**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전 희 정 의원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 과정의 공정성·객관성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주요 대관 사항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, 사용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유 제시를 명확히 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(안 제3조)

나. 사용허가의 제한(안 제4조)

다.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의2)

라. 위원회의 구성(안 제4조의3)

마. 위원장의 직무(안 제4조의4)

바. 회의(안 제4조의5)

사. 위원회의 운영 등(안 제4조의6)

아. 사용허가의 취소·철회 등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- 「행정기본법」 제17조 ~ 제19조
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~ 제24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근 태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 과정의 공정성·객관성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주요 대관사항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,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대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이 조례 제2조의3(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)[1] 규정에 따르면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어 대관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추후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 생 략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Ⅶ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

1) **「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」 제2조의3(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)** 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**따로 조례로 정한다.**